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포집시설의 세부내용	설치 부지 위치	설치 부지 면적	
	포집 설비 용량	포집 방식	
	포집 형태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포집시설 위치·면적 등 설치 부지		
	포집시설 용량·포집방식 등 설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